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. 12. 8 선고 2021가단823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7.

판 결 선 고 2022. 1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921㎡ 지상 라멘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86.6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24, 2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식당 4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 중 증인신문에 소요된 비용과 감정비용 중 185,9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공주시 C 전 92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공주시 D 대 448㎡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24, 2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45㎡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.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위 (ㄱ)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3. 소송비용의 부담: 증인신문에 소요된 비용과 감정비용 중 185,9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소를 취하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이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.

판사 송인석

별지

도면 표시



